고객응대직원 보호에 관한 규정

사규번호 22-06-1 소관부서 인재관리팀

제정 2018년 10월 18일 개정 2020년 05월 01일 개정 2021년 09월 28일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직원을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,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회사의 의무와 고객응대직원의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응대직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정의)

- 1. "고객응대직원"이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2. "고객"이란 소비자를 포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- 3. "상품 및 서비스"란 감독당국의 인/허가를 득하거나 자체 개발한 회사의 '금융상품' 및 '서비스'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이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 적용대상은 고객응대직원으로 한다.

제4조(고객응대업무 표준 매뉴얼의 수립 및 교육)

-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고객응대업무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공한다.
 - 가. 직원이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와주는 회사 내의 공식적인 제도 와 절차
 - 나. 심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고객의 경우 고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보장
 - 다. 고객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 직원의 업무 중단 시간에 관한 사항
 - 라. 개별 직원이 응대하기 어려운 고객의 요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응방안

- 마. 민원 해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
- 바. 직장 내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에 관한 사항
- ②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및 직원은 매뉴얼에 따라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고객응대 부서 및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객응대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문제행동을 반복하거나 악성적 문제행동을 한 고객에 대해서 상담 제한과 같은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.
- ④ 고객응대 부서의 관리자(부서장)는 고객응대 표준 매뉴얼(별첨)을 따르되, 부서 특성을 반영하여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(이하 '폭언 등'이라 한다)를 예방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세부 행동요령 등을 마련 할 수 있다.
- ⑤ 회사는 고객응대직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

제5조(고충처리 상담 창구 운영)

- ① 회사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직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사내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한다..
- ② 고객응대직원은 고객응대에 대한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, 고충처리위원 또는 고충상담원에게 대면, 유선, 온라인(메일 또는 메신저)등 모든 채널을 통해 상담(신고)할 수 있다.

제6조(고객응대직원 보호 위원회)

- ① 고객응대직원 보호 위원회는 인사부서장(위원장), 소비자보호업무부서장, 내부통제부서장, 지점관리업무부서장, 콜센터부서장, 법무부서장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필요시 사안별로 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. 동 위원회의 간사는 인사담당부서 직원이 맡는다.
- ② 위원회는 연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, 위원장은 필요시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. 다만, 심의를 요하는 사안이 없는 경우 정기회의는 생략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에 대해 심의하고, 관련 부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요청 받은 부서는 빠른 시일 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④ 회의의 합리적인 진행을 위해 해당 고객응대직원 또는 부서장 등이 배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7조(보호조치)

-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폭언 등 피해를 입은 직원이 발생하는 경우 직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다음 각호 중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
 - 1. 직원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한 후,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. 단, 고객의 생명, 신체, 중대한 재산의 이익과 관련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자의 즉각적인 업무

담당자 교체 조치

- 2. 직원에 대한 치료 및 상담지원
- 3. 폭언 등 고객의 행위가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피해를 입은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
- 4.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직원의 피해 정도 및 해당 직원과 다른 직원에 대한 장 래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 요구
- 5. 직원이 직접 폭언 등의 행위를 한 고객에 대한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소, 고발,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, 절차적 지원
- 6.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직원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실시
- 7. 그 밖의 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
- ② 직원은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직원이 제2항의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,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.

제8조(준용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 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.05.01.> (개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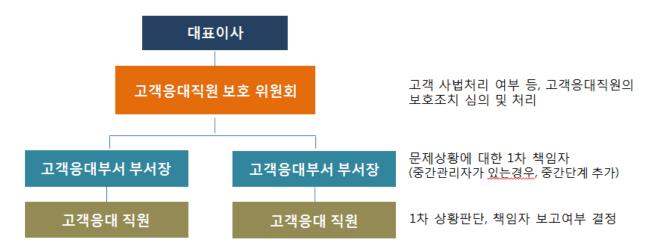
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1.09.28.> (개정)

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첨) 고객응대업무 표준 매뉴얼

1. 문제상황 발생시 대응조직



주) 필요 시, 조직 내 문제행동고객 전담자를 지정하여 상황 발생시 대응

2.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

- 가.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게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 내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예방한다
 - (적용예시)
 - (전화상담시) 고객의 무리한 요구나 욕설 시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있음을 안내
 - 상습적으로 폭언 등을 행사하는 고객에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사전 안내
- 나. 고객으로부터 심한 폭언 등을 당하거나 고객과 심한 언쟁을 했을 때 업무중단(휴식)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.
- 다. 문제행동고객^{주)} 에 대한 고객응대직원의 사과와 회사차원의 보상을 금지 한다
 - 주) 문제행동고객
 - 1. 과도한 금전적 보상 또는 특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고객
 - 재산적 피해가 회복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과도 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
 - 불친절 또는 사소한 업무 과실을 빌미로 과도한 보상 또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
 - 2.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익 또는 계약내용이 없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고객
 - 3. 모욕, 명예훼손 또는 성희롱 발언 등 형사상 위법행위 등을 하는 고객
 - 4. 정상 처리된 민원에 대해 반복적, 감정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, 직원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유발하는 고객
 - 5. 기타 상기의 내용에 준하는 문제행동고객
- 라. 이 매뉴얼에 따라 응대를 중지하여 발생한 민원은 인사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.
- 마. 직장 내 고충이나 애로사항은 사내 고충처리제도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.
- 바.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세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.

3. 유형별 문제행동고객 대응수칙

- 가. 기본원칙: 원칙준수, 과격한 언행에 대해서는 녹취·녹화로 증거 확보, 끝까지 정중함 유지 고객 대응 시 감정적인 표현이나 논쟁은 삼가야 한다.
- 나. 고객응대부서 부서장은 직원의 상태를 판단하여 휴식 부여 또는 근무조정 등을 조치하고, 상황에 경중을 신속하게 판단하여 대응한다.
- 다. 확대, 확산의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또는 명백한 악성 민원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1회성이라도 법적 대응한다.
- 라. 유형별 문제행동고객 대응 절차는 아래와 같다.

- 비대면 문제상황 발생 時

절차	세 부 내 용
1	전화상담 중 무리한 요구, 욕설, 폭언, 성희롱 등 문제상황 발생 시, 즉시 정중하게 중지를 요청한 후 상담을 계속 이어간다 [예시 : 고객님,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상담이 어렵습니다.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.]
2	중지 요청에도 계속되는 경우 응대 멘트 (단호하게 중지 재요청 / 녹음되고 있음을 고지)로 대응한다. [예시 : 고객님, 업무상담과 관련 없는 욕설이나 폭언, 성희롱 시 관련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, 통화 내용은 녹음돼 증거 자료로 제공됩니다. 지속적인 욕설이나 폭언시 통화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. 폭언을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.]
3	비아냥, 무시하는 듯 한 말이나 맞대응 하는 욕설, 폭언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.
4	중지 요청 및 응대 멘트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상담이 더 이상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전화를 종료한다고 통보한다. [예시 : 더 이상 상담 진행이 어려워 통화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.]
5	전화 종료 통보에도 계속되는 경우 일방적으로 통화 종료한다.
6	지체 없이 관리자(부서장)에게 상황을 보고한다.
7	보고받은 관리자(부서장)는 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쟁 및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.
8	통화 종료 후 수분 내 다시 전화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대응하지 않고 상담 불가 안내를 한다.
9	일정 시간 경과 후 전화가 오는 경우 재 상담을 하고,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한다.

10	관리자(부서장)는 문제상황이 종료된 직후, 문제행동고객 대응 결과를 '고객응대직원 보호 위원회'에 보고한다.
11	고객응대직원 보호 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한다.

- 대면 문제상황 발생 時

절차	세 부 내 용
1	고객(직접)응대 중 무리한 요구, 욕설, 폭언, 성희롱, 폭력징후 감지 등 문제상황 발생 시, 정중하게 중지를 요청한 후 고객응대를 계속 이어간다. [예시 : 고객님, 폭언을 계속하시면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습니다. 폭언을 중단해 주십시오.]
2	중지 요청에도 폭언 등이 계속되는 경우 단호한 어조로 중지를 재 요청하고, CCTV가 녹화되고 있음을 고지하고, 과격한 언행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녹취실행을 추가 고지한 후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녹음한다. [예시: 고객님, 지금 CCTV가 녹화되고 있으며, 지금부터 모든 내용을 녹음 하겠습니다. 업무상담과 관련 없는 욕설이나 폭언, 성희롱 시 관련 법률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, 녹화(녹음) 내용은 증거 자료로 제공됩니다. 욕설이나 폭언을 지속할 경우 상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. 즉시 중단해 주십시오.]
3	고객 대응 시 감정적인 표현이나 논쟁은 삼가야 한다.
4	과격한 언행에 대한 중지 요청 및 녹화·녹취 고지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고객응대가 더이상 불가함을 설명하고 고객응대를 종료한다고 통보한다. [예시 : 더 이상 업무진행이 어려우므로 상담을 종료하고 관리자 보고 및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.]
5	지체없이 관리자(부서장)에게 상황을 보고한다.
6	보고받은 관리자(부서장)는 사안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분쟁 및 갈등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적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.
7	문제행동 고객이 계속 소란을 피우는 경우 경비/경찰의 도움을 받아 퇴거 조치한다.
8	퇴거된 고객의 재입장을 대비하여 증거(CCTV,녹음파일,메모 등) 및 증인을 확보한다.

9	관리자(부서장)는 문제상황이 종료된 직후, 문제행동고객 대응 결과를 '고객응대직원 보호 위원회'에 보고 한다.
10	고객응대직원 보호 위원회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한다.